

**용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(하나은행)에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.**

- 1) 서울특별시 추천서
- 2) 인적 / 본인 확인서류
  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  - 신분증 사본
  - 혼인관계증명서(기혼자)
- 3) 소득재직서류
  - ① 직장인
   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- 연간소득확인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
    - 재직증명서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)
  - ② 자영업자
    - 연간소득확인서류(소득금액증명 등의 총소득액)
 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증명으로 대체 가능) 또는 사업영위 증빙서류
  - ③ 기타
    - 건강보험료 납부서류(추정소득 사용시)
    -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(세무서발행)
- 4) 자금용도 확인서류(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류)
  -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(사본징구)
  - 계약금 지급 영수증(임차보증금의 5%이상, 사본징구)

※자세한 사항은, 하나은행 콜센터 ☎ 1599-2222으로 문의 바랍니다.

## [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적용]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

**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신청대상자 협약은행(하나은행)에 대출연장 신청시 필요 서류입니다.**

※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,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.

### □ 공통 서류

- 주민등록 등초본(1개월이내 발급분),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, 계약해지 통보서류(내용증명 등),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(舊 등기부등본, 1개월이내 발급분)

### □ 유형별 서류

-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(아래 각 호 중 하나)
  1.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(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)
  2.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
  3.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(舊등기부등본)
- 임차주택에 경매/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(아래 각 호 중 하나)
  1. 경매/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/공매 통지서
  2. 압류 및 경매/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(舊등기부등본)
  3.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,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
  4. 매각물건명세서 (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, 임대차기간, 보증금, 전입일자, 확정일자,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)
-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(아래 각 호 중 하나)
  1. 소송접수증명원 / 2. 소송계속증명원 / 3. 소제기증명원

※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콜센터 ☎ 1599-2222으로 문의바랍니다.